

2001년도

신진교수연구과제 지원사업 신청요강

2001. 2.

한국학술진흥재단

I. 사업 목적

신진교수들의 연구참여 기회 확대로 우수한 신진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대학의 연구 능력 제고

II. 기본 계획

1. 지원 예산 : 4,500백만원

2. 지원 분야 : 전 학문분야

※ 편람, 사전 편찬, 교재 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3. 지원 방향

- 우수한 신진교수 인력의 발굴 지원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의 극대화
- 연구비 지원의 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 적정 연구비 신청 유도
 - 연구과제 성격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

4. 지원 형태 및 규모

- 가. 지원 형태 : 단독 연구
- 나. 지원 규모 : 과제당 1,200만원 이내
- 다. 연구 기간 : 1년

III. 공모 및 신청

1. 공모 방법

- 대학(교)의 총(학)장에게 신청요강의 발송을 통하여 공고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공고

2. 신청 방법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술연구자 정보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신청 (On-Line과제신청)
 - ※ 연구업적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의 재단 학술 연구자 정보 DB를 활용하므로,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는 온라인 신청마감일까지 재단 학술연구자 정보DB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는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토록 하고, 연구계획서는 동사업의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장이 수합하여 일괄 신청함.
 - ※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은 연구자의 국내 교원 임용경력을 확인하여 최초 임용경력 5년(국내 타대학의 교원경력 포함)을 초과하는 자가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작성
- 연구계획서 : 과제별 6부(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소속대학 기관장을 통해 일괄 신청)
- 교원경력확인서 : 신청기관별 1부(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연구자 소속기관장이 작성)

※ 연구계획서 미제출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3. 신청 기간 : 2001. 6. 22(금) 18:00 한

▶ On-line 신청기간 : 2001. 6. 18(월) ~ 6. 22(금) 18:00

※ On-line 신청마감일(6. 22)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번호 부여 : 2001. 6. 23(토) ~ 6. 25(월)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연구계획서 제출 : 2001. 6. 29(금) 18:00한

4. 신청 자격 및 요건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5조 해당자중
 - 최초 임용경력 5년 이내인 국내 대학의 소속교원(임용기간 산정 기준일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 학교의 공식절차에 의해 임용된 교원 (예: 기금교수, 연구교수, 계약교수 등)
- ※ 계약교수 등 임용기간이 명시된 교원의 경우 신청 대학교에서 연구결과보고 완료까지의 연구비 및 연구과제를 관리하여야 함.(타 대학으로 소속 변경시 재단 관리 지침 준용)

5.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교수해외파견 포함)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1년도 교수해외파견연구 및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강의 파견 수혜자
-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사업으로 1회이상 수혜 받은 연구자

나. 연구 참여 제한

본 신진교수연구과제 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 할 수 있음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신청시기부터 적용됨) 단, 현재수행 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1.12.31 이후인 과제는 연 간 연구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며, 교육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와 기공모된 사업 중 탈락이 확정된 과제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교육부 두뇌한국(BK)21사업 참여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내용	
1단계	행정요건심사	신청자격 여부
2단계	전공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3단계	종합심사	예산배정 및 과제선정

2. 심사내용

가. 제1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주관 : 재단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행정요건 저촉여부 검토 (2단계심사 가부 결정)

나. 제2단계 심사 (전공심사)

- 심사주관 : 전공심사단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
- 심사방법 : 5인 이내의 우송심사
- 심사항목

심사항목	심사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의 명료성	신청과제의 창의성, 연구의 구체적 목표설정과 연구의 필요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논문 발표실적의 양과 질적 수준을 고려한 연구수행 능력
연구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간의 연계성, 연구수행방법과 이론적 배경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과제 종료후 예상되는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대효과
연구비의 적정성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연구비 설정의 타당성

다. 제3단계 심사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총괄위원회
- 심사내용 : 예산 배정 및 지원과제 선정

2. 선정

심사결과 고득점순위에 의하여 학문분야별로 선정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실행예산서 접수후 소속대학(교) 총(학)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통보에 따른 실행예산서 접수 후 지원결정액 100% 지급

2. 연구비 관리

가. 관리방법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나. 연구비 회수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했을 때
- 연구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했을 때
- 당초 연구결과보고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연구기간 종료 후 2년6개월)이 경과 하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위반 하였을 때

VI.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1. 제출방법

각종 보고서는 소속 기관의 기관장을 통해 제출함.

2. 중간 보고서 : 제출생략

3. 결과 보고서

가.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나. 제출자료

- 연구결과논문 (학술지 게재논문 또는 게재 요청된 논문) 또는 학술저서
 - * 학술지 투고접수증 첨부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사용내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논문초록
- ※ 위의 자료는 한글 버전 3.0 이상 또는 Ms 워드로 작성하여 E-mail(result@ms.krf.or.kr)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하여서는 제출 완료시까지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교수해외과건 연구비 포함) 지원을 제한함

4. 최종연구결과물 발표

가. 연구결과물 발표에 대한 책무

신진교수연구과제 수혜자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해야 함

<예 고>		
◇ 2002년 지원과제부터 최종연구결과물은 아래와 같은 학술지(저서)에 게재(출판)되어야 함		
사업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 신진교수과제지원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교육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학술지 -전문학술저서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교육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SCI급) 학술지

나. 제출 시기

- 국내·외 학술지 별쇄본 또는 게재논문(게재확인서 포함), 전문학술저서
 -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결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함
 - 국문 표기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3-○○○○○○)”
 - 영문 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1-003-○○○○○○)”
-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 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음

다. 연구결과 미발표자에 대한 관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는 교육부의 학술연구비 및 재단의 연구비(교수해외파견 연구비 포함)지원을 제한함

- ※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재단 소정평가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급은 경고 및 3년, D급은 경고 및 5년간 연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성과의 사후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성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연구책임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대학 등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 재단이 당초 연구비 지원시에 특정조건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VII. 기타 사항

- 심사 학문분야 코드는 재단에서 정한 학문분류표를 참고하여 1순위에 소분류 분야명 및 code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람.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 바람.

제출 및 문의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1팀
TEL (02)3460-5572~5 FAX (02)3460-5580

(붙임) 2001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재단사업 공통)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석·박사 과정)의 수당	- 석사과정생 : 20~40만원/월 - 박사과정생 : 30~60만원/월
② 연구 활동 경비	- 연구활동비 연구참여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1인당 월 20만원 이내 (인문사회분야는 1인당 월 25만원 이내)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 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 실제 소요액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 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이내 체재비)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③ 직접성 경비	-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 문헌 및 재료구입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애용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애용 - 실제 소요액
	- 논문게재료 및 특허출원비	-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에 한함)

※ ②항목은 단독연구 4백만원 이내, 2인연구 7백만원, 3인이상 연구는 9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기기중 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치 않음

양식 #1 >

※ 접수 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 과제 번호	On-line신청마감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계획서

(사업명 :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			

※ 연구계획서 6부중 겹표지(본 페이지)는 1부만 붙이고, 나머지 5부는 겹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접 수 번 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과 제 번 호	On-line신청마감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I . 연구과제명

국문 :

영문:

II . 연구내용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아울러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는 삼가하십시오.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III. 연구수행계획

1. 신청연구비

가. 소요예산 총괄

구 분	금 액	비 고
재단 신청액	천원	
자비 및 기타	천원	

※ 재단 신청액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한 연구비와 동일하여야함.

나. 신청연구비 산출내역 (1차년도)

항 목		금 액	산 출 기 초 (단위 : 원)
인 건 비	· 연구보조원 수당	천원	
연구활동 경비	· 연구활동비	천원	
	· 연구회의비	천원	
	· 여 비	천원	
	· 유인물비(인쇄비,수용비)	천원	
	· 공공요금 등 잡비	천원	
직접성 경비	· 조사연구비	천원	
	· 문헌비 및 재료구입	천원	
	· 장비사용료(임차료)	천원	
	· 연구기기비	천원	
	· 논문게재료 및 특허출원비	천원	
계		천원	

※ 산출내역은 재단신청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공모요강의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추산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는 연구비 삭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

- ☞ 본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게재를 희망하는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를 4종 이상을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 국내

학 술 지 명	발 행 기 관

- 국외

학 술 지 명	발행국가	발 행 기 관

